

제22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국 마을자치과)

2021. 6. 10.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090호
- 나. 제 출 자 : 박찬길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1. 5. 28.
- 라. 회부일자 : 2021. 5. 28.

2. 제안이유

금천구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과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 및 지원 사항 규정 (안 제3조)
- 나. 국·공유시설 무상사용 (안 제4조)
- 다. 보조금 신청 및 정산사항 규정 (안 제5조)
- 라. 표창 규정 (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입법예고 : 2021. 5. 28. ~ 6. 2.

5. 검토의견

가. 조례안 제정 이유

본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천구 지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발전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의원발의되었으며 총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주요 내용

1)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 및 지원 사항 규정 (안 제3조)

- 한국자유총연맹 사업활성화를 위한 경비 지원의 범위를 규정함.

2) 국·공유시설 무상사용 (안 제4조)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

3) 보조금 신청 및 정산사항 규정 (안 제5조)

4) 표창 규정 (안 제6조)

다.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천구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근거와, 지원 내용 등을 정한 것으로 법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며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총연맹”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이나 시설물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총연맹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4. 1.]

제3조(출연·보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총연맹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1.]